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자에 대한 학비 등의 상환〉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83호)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85호)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91호)

〈중도퇴교자에 대한 양성비용 상환〉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95호)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04호)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09호)

〈교과과정의 목적 명시〉

-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02호)
-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07호)
-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08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10
1.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자에 대한 학비 등 상환 규정 신설	10
2. 중도퇴교자에 대한 양성비용 상환 규정 신설	17
3. 교과과정의 목적 명시	22
※ . 참고자료	27

I . 제안경위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회부일자
1	220758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5-01-16	2025-01-17
2	220758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5-01-16	2025-01-17
3	220759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5-01-16	2025-01-17
4	220859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2025-02-28	2025-03-04
5	220860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2025-02-28	2025-03-04
6	220860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2025-02-28	2025-03-04
7	2209102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2025-03-19	2025-03-20
8	220910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2025-03-19	2025-03-20
9	220910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2025-03-19	2025-03-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의안번호 220758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안)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육군3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8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220758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안)

현행법은 육·해·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관학교 설치법」은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8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220759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안)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9조의2 신설).

4. 의안번호 220859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안)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각군 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안 제12조 신설).

5. 의안번호 220869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안)

현행법은 육·해·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군의 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장기복무장교로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2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23년 기준 120명에 이르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6. 의안번호 220860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안)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3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7. 의안번호 2209102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교과과정이 간호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8. 의안번호 220910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육군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9. 의안번호 220910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자에 대한 학비 등의 상환

개정안은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등”이라 함)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¹⁾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②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받거나 면제받은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토록 하려는 것임(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육군제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2 신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의2(학비 등 상환) ① 사관학교 ²⁾ 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

	<u>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받거나 면제받은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u> <u>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u> <u>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u> <u>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학비등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학비등을 산정하여야 한다.</u> <u>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비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u>
--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9조의2 신설임

정법률안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임.

- 「군인사법」 제7조제1항3)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살펴보면,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 장교인 경우에는 기본 10년,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임.

[각 사관학교의 의무복무기간]

- 「군인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에 해당하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나 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에 해당
- 「군인사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 항공기 제외)의 의무복무기간은 해군 및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5년, 그 외 사람은 13년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

3)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2016.12.20., 2020.12.22.>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매년 사관생도 교육을 위해 적지 않은 국비를 투입하고 있고, 국방부에 따르면 4년 과정의 사관생도 기준으로 직접비, 간접비 포함 사관생도 1인당 약 2억원 이상의 양성비용이 소요되고 있음.⁴⁾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인원 수는 최근 3년간 평균 연 20명 이상으로 적지 않으나,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학비 상환 규정이 부재함.

[사관학교별 평균 1인당 양성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육3사	평균
비용	284	314	321	219	184	26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2025년 3월)

[현역복무부적합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인원 수]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육사	-	3	4	4	3	14
해사	-	10	2	5	3	20
공사	1	1	4	-	2	8
3사	5	7	11	10	10	43
간호사	-	-	3	2	1	6
계	6	21	24	21	19	91

주: 현역복무부적합, 심신장애 전역, 제적인원 포함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2025년 3월)

4) 상세한 양성비용은 참고자료 1. 사관학교 1인당 평균 학비 참조

- 이에 반해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6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명시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학비 상환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학비상환 규정]

제10조 (의무복무)

- 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상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 사관학교의 경우 사관생도는 2학년 2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진행 서약서’를 작성하며,⁵⁾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재학 중 퇴교자 모두에게 교육비 환수제도를 적용 중임.

- 이에 개정안은 사관학교 등을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미이행한 경우에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규정을 신설

5) 향후 7년간 복무(3·4학년 및 장교 5년)에 대해 동의하는 서약서

함으로써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양성된 우수한 장교들이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성실한 군복무를 이행토록 하고,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며, 「경찰대학 설치법」 등 다른 법령 취지와의 일관성이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경찰대학 설치법」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양성비용을 환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한편,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장교인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이에 따라 5년차 전역 승인을 받은 장기복무장교가 개정안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5년차 전역 승인을 받은 장기복무장교가 개정안에 따른 학비 등 상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8조의2(학비 등 상환) ① 사관학교⁶⁾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받거나 면제받은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학비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제8조의2(학비 등 상환) ① 사관학교⁷⁾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받거나 면제받은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학비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5년이 되는 해의 전역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임.

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임.

2. 중도퇴교자에 대한 양성비용 상환 규정 신설

개정안은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자(수탁생도는 제외한다)가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육군3사관학교는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⁸⁾ 외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성비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토록 하려는 것임(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육군제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신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양성비용 상환) ① 사관학교에 입학한 자(수탁생도는 제외한다)가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 ⁹⁾ 을 이수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8)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임.

	<u>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성비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u> <u>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양성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양성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u> <u>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성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u>
--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12조 신설임

- 사관학교 등의 중도퇴교자는 2020년 117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특히, 사관학교 중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중도퇴교자는 2020년 24명에서 2024년 63명으로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큼.

[사관학교 중도퇴교자 현황]

구분	학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육사	1	14	20	31	22	22
	2	7	7	21	10	11
	3	1	5	6	23	13
	4	2	5	10	14	17
	계	24	37	68	69	63
해사	1	4	2	12	12	7
	2	0	1	7	8	2
	3	2	4	3	12	6
	4	6	2	3	4	6
	계	12	9	25	36	21
공사	1	10	10	12	11	7
	2	2	2	3	2	4
	3	4	2	2	12	4
	4	1	2	3	8	5
	계	17	16	20	33	20
3사	3	39	31	42	45	48
	4	18	15	8	10	22
	계	57	46	50	55	70
간호사	1	1	2	1	0	1
	2	4	2	1	0	0
	3	2	2	3	3	5
	4	0	1	1	0	0
	계	7	7	6	3	6
총계	1	29	34	56	45	37
	2	13	12	32	20	17
	3	48	44	56	95	76
	4	27	25	25	36	50
	계	117	115	169	196	18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2025년 3월)

□ 이와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학비 등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학교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 규정(「군인사법」 제62조제2항)이 마련되어 있음.¹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사관학교의 경우에도 2학년 2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진행 서약서’를 작성하며,¹¹⁾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미복무 시 교육비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생도 중 2학년 1학기 이후의 중도퇴교자에 대한 양성비용 상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퇴교자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4년간 사관학교 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장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0) 참고로,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향후 7년간 복무(3·4학년 및 장교 5년)에 대해 동의하는 서약서

참고로, 사관학교 중도퇴교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 이외에도 사관학교 양성과정의 개선, 중도퇴교자에 대한 학비상환 규정 신설의 영향, 초급 군장교 복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2학년 1학기 이후의 중도퇴교자에 대한 양성비용 상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미국 사관학교의 사례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진행 서약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성비용 상환 규정이 적용되는 중도퇴교자의 학년(학기)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국방부는 외국의 사례와 사관학교 등의 중도퇴교자가 지속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학년의 무분별한 자퇴를 방지하기 위해 양성비용 환수제도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히 단기장교에게 지급되는 군 가산복무지원금은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중도탈락 시 환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관학교 재학 중 중도퇴교자에 대하여도 양성비용 환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사 제도와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임.

3. 교과과정의 목적 명시(김문수의원안)

개정안들은 사관학교 교과과정의 목적으로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것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사관학교 설치법 안 제4조제2항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교과) ① (생략)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u>한다</u> .	제4조(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하고,</u> <u>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u> <u>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u> <u>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u> <u>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u> <u>야 한다</u>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제5조제2항 개정임.

□ 헌법 제5조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국군의 강령을 규정하고 있음.

[국군의 강령]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또한,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16조제3호에서 장교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 이와 같이 헌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장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관학교 교과과정의 목적이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임관 후에도 장교가 군복을 입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전문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여 국군의 강령을 준수토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사관학교 등의 학칙 중 교육목표 및 방침에서도 개정안의 교과과정의 목적과 유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관학교 학칙의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 등]

「육군사관학교 학칙」 제 3 조 (교육목표)

① 본교의 교육목표는 사관생도로 하여금 장차 아래의 소양을 함양하는데 있다.

1.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관 확립
2. 위국헌신의 군인정신과 리더십 함양
3. 첨단 군사 전문지식 습득 및 활용능력 배양
4. 창의적·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5.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연마

제 15 조 (교과과정)

- ① 교과과정은 학위교육과정과 군사훈련과정으로 나눈다.
- ② 학위교육과정은 군사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학, 공학, 체육학 분야를 포함한다.
- ③ 군사훈련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④ 복수전공제 또는 부전공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 학칙」 제3조(교육목표 및 방침)

- ① 본교의 교육목표는 전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충성심, 명예심, 희생정신이 충만한 군인정신과 리더십 함양
 2. 장교로서의 직무수행,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3. 불굴의 투지 함양을 위한 강인한 체력 연마
 4.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고도의 민주시민의식 고취

「공군사관학교 학칙」 제3조 (교육목표)

- ① 본교 교육은 다음 각 호를 목표로 한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은,

 1.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 정직과 성실, 도덕적 용기를 갖추어 신뢰를 얻고 명예롭게 산다.
 2. 학술적, 군사적, 체력적 역량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갖춘다.
 3. 부하를 교육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도전적 임무를 완수하도록 이끌며, 극한의 상황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한다.
 4.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한다.
 5. 명확하고 논리적인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으로 팀워크를 발휘한다.
 6. 과학적인 추론능력과 공학적인 적용능력을 갖추어 공군무기체계 및 항공우주력 건설과 운용을 선도한다.
 7. 인간사회의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적절한 상호작용을 한다.
 8. 국제사회의 정치·경제·군사적 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이해하고 안보전문가로서 헌신한다.
 9.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로 일생에 걸쳐 성장함으로써, 공군과 군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로 헌신한다.
 10.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불굴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갖춘다.

□ 국방부는 「사관학교 설치법」이 사관학교 설치·운영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교과과정의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내용은 각군 사관학교 학칙으로 정하고 있고,¹²⁾ 장교로서의 전문성, 합리적 사고능력, 헌법적 가치관 외에도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다양하며, 장교에게 필요한 모든 소양을 법조항에 기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소요가 큰 법령보다는 학칙으로 교육목적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12) 참고자료 2. 사관학교 학칙의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 등 참조.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바, 민주시민 교육 등을 각 군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학칙, 교과과정 개정 등을 검토 중임.

[관계 법령 규정]

「고등교육법」 제 19 조 (학교의 조직)

-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 12 조 (학과·전공 및 교과)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 36 조 (학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사관학교 1인당 평균 학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수업료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교재비
육사	1학년	30,690	6,034	2,440	17,147	4,530	539
	2학년	31,833	6,034	2,440	18,303	4,518	538
	3학년	32,838	6,034	2,440	19,295	4,530	539
	4학년	34,016	6,034	2,440	20,489	4,516	537
해사	1학년	23,486	3,983	1,384	13,106	4,614	399
	2학년	24,836	3,983	1,384	14,456	4,614	399
	3학년	26,336	3,983	1,384	15,956	4,614	399
	4학년	27,836	3,983	1,384	17,456	4,614	399
공사	1학년	25,244	3,989	1,295	12,150	5,264	2,546
	2학년	26,594	3,989	1,295	13,500	5,264	2,546
	3학년	28,094	3,989	1,295	15,000	5,264	2,546
	4학년	29,594	3,989	1,295	16,500	5,264	2,546
국간사	1학년	24,437	4,301	1,967	12,967	4,731	471
	2학년	26,096	4,301	1,967	14,317	4,731	780
	3학년	27,374	4,301	1,967	15,817	4,731	558
	4학년	28,582	4,301	1,967	17,317	4,731	266
육3사	3학년	25,007	2,942	2,260	15,817	3,380	608
	4학년	26,507	2,942	2,260	17,317	3,380	608

* 퇴교 시기 혹은 전역 시기에 따라 환수금액 조정 적용

** 학비, 기숙사비는 인근 국·공립대학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2025년 3월)

